

## 2026년 제3회 의정부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재공고

2026년 제3회 의정부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6년 5월 6일  
의정부시인사위원회위원장

### ◆ 재공고에 따른 유의사항

의정부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18호 「2026년 제3회 의정부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  
계획 공고」에 따라 원서접수기간(2026. 4. 29. ~ 5. 4.)중 **응시원서를 기 접수한 응시생은 별도 절차  
없이 재공고에 따른 응시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시험절차를 진행함.(재접수 불필요)**

※ 본 재공고는 응시원서 접수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 인원보다 적은 경우에 해당됨에  
따라 재공고하는 사항입니다.(서류전형 합격 인원이 선발예정인원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 포함)

### 1. 임용분야 및 선발 예정인원

직 급	임용분야	임용기간	주요업무	요구 부서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주35시간)	목공소 운영관리 ( 1명 )	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목공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li><li>○ 산림 및 목공 관련 교육 지도 (목공예 체험학습지도 관리 등)</li><li>○ 목공소 내 기계장비 등 점검, 작동 및 유지관리</li><li>○ 수강생 및 이용자 안전교육 및 안전사고 예방 지도</li><li>○ 목재 자재·소모품 수급 및 재고 관리</li><li>○ 체험 프로그램 예약 관리, 일일 업무 보고, 만족도 조사 업무 등 행정사무</li><li>○ 목재 활용 조형물 제작, 전시 업무</li><li>○ 기타 부서장이 지정하는 업무 등</li></ul>	녹지산림과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주35시간)	방문건강관리 ( 1명 )	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주 업무) ICT융합 방문건강관리사업</li><li>○ 건강취약계층 대상자 발굴 및 등록·관리, 건강 스크리닝 및 군 분류</li><li>○ 대상자 개별 가정 방문 및 스마트 기기, AI 로봇을 통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li><li>○ 기초 건강검사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li><li>○ 방문대상자 사례관리 및 보건소 내·외 자원 연계</li><li>○ 기타 방문보건팀 업무 및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위한 연계·협력 업무 등 보건소장이 인정하는 업무</li></ul>	건강증진과

직 급	임용분야	임용기간	주요업무	요구 부서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감 (주20시간)	불법주정차 단속 (1명)	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법주정차 단속</li> <li>○ 기타 교통지도 관련 업무</li> </ul>	송산3동 허가지원과

※ 시간선택제임기제: 근무실적에 따라 최대 5년 범위 내에서 임용 기간 연장 가능

## 2. 관련 근거

- 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제27조, 제31조
-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 제17조, 제21조의3·4·5, 제38조의16
- 다.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및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 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 3. 응시자격 요건(기준일: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가. 공통요건

- 1) 지역 및 성별: 제한 없음(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
- 2) 연령: 18세 이상
- 3)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및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4)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4조(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 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법률」 제82조( 취업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학교를 포함한다)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나. 자격요건 ※ 적용기준일: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직 급	임용분야	자격요건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주35시간)	<b>목공소 운영관리 ( 1명 )</b>	<p>목공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li> <li>2. 2년 이상 임용예정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li> <li>3.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li> </ul>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margin-top: 10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분야 실무경력)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기업체, 국·공립 목재 문화체험장, 목공소 등 관련 분야에 종사한 실무경력</li> <li>※ (근무조건) 주말, 휴일 근무 가능자</li> </ul> </div>

직 급	임용분야	자격요건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감 (주35시간)	방문건강관리 ( 1명 )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1. 1년 이상 임용 예정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자동차운전면허 2종 보통 이상 취득자 중 운전이 가능한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 ※ (우대사항) 전산관련 자격증 소지자(컴퓨터 활용, 워드프로세서 등)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감 (주20시간)	불법주정차 단속 ( 1명 )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1. 자동차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의 면허증 소지자 2. 평일 저녁(21시), 토요일 및 공휴일에 근무 가능한 자 3. 1년 이상 임용 예정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실무경력)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기업체에서 단속(일반교통, 주정차, 전용차로, 무단투기, 금연구역 등), 운전, 민원 응대(상담) 경력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5항) 경력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는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 4. 시험 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자격·경력 및 구비서류 등 형식요건 심사)

- 1)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채용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2) 임용예정 분야와 관련성, 경력 기간, 직무관련 자격증, 기타 업무 실적을 나타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함
- 3)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 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음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직무수행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1)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 및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2) 평가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 지식과 응용 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3) 최종합격자 결정방법

- (평가방법) 평정 요소마다 ‘상, 중, 하’로 평가
- (최종합격자 결정)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응시자 중 “상”의 개수가 많은 응시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중”의 개수가 많은 응시자)

#### □ (불합격 기준)

-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
-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
- 면접 포기자 및 면접 불참자

□ (추가 합격자 결정) 면접시험 결과에 따른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결과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순위 평정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재공고)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하여야 함(서류전형 합격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 면접결과 공개: 면접자가 요청한 경우 평가 결과를 종합한 상·중·하의 개수 공개 (단, 평가요소별 상·중·하는 비공개 대상)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의안번호: 제2023-225호 / 의결: 2023. 2. 28.)

## 5. 보수 수준

임용분야	산출기초	연봉액	비고
목공소 운영관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임기제공무원 8급(상당) 기준연봉 하한액	38,759천원	주35시간
방문건강관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임기제공무원 9급(상당) 기준연봉 상한액의 65%	31,099천원	주35시간
불법주정차 단속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임기제공무원 9급(상당) 기준연봉 상한액의 65%	17,771천원	주20시간

※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되는 사람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각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채용예정자의 자격, 능력, 경력, 이전 보수 수준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으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보수 지급

※ 연봉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6. 응시원서 접수 및 서류제출

가. 접수기간: 2026. 5. 13.(수) ~ 5. 15.(금), 09:00 ~ 18:00

※ 중식시간(12:00~13:00) 제외

나. 접수방법: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및 등기우편접수 ※ 응시원서: 공고문 첨부

### 등기우편접수 안내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우편소인분에 한해 유효하며, 등기우편 발송 시 도착 예정 일자 등을 확인 후 반드시 사전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31-828-2315  
 ※ 등기우편 접수 주소: (11622)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1, 의정부시청 자치행정과 인사팀 채용담당자
- 응시분야 직급의 응시수수료 상당 금액의 **통상환증서(정부수입인지 사용 불가)**를 우체국에서 구입 후 동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받을 분 기재금지(금융업무로 마감시간에 유의)
- 우편접수자의 응시번호는 접수 마감 후 개별 문자 발송합니다.
- 서류 미비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공고내용을 빠짐없이 확인하여 서류 전형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봉투 겉면에 반드시 “응시원서”라고 기재하여 송부

다. 접수처: 의정부시청 자치행정과 인사팀(의정부시 시민로 1, 본관 2.5층)



## 7. 시험일정

구 분	기 간
원서 접수	2026. 5. 13.(수) ~ 5. 15.(금), 09:00 ~ 18:00 * 중식시간(12:00 ~ 13:00) 제외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6. 5. 20.(수)
면접시험	2026. 5. 27.(수) 전·후
최종 합격자 발표	2026. 6. 10.(수)
임용예정시기	2026. 7월 중 * 임용분야 별 상이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은 의정부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 <http://www.ui4u.go.kr> 접속 → 시정소식 → 알림마당 → 임용시험 공고(공무원)

◆ 재공고 시 시험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의정부시청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예정

## 8. 제출서류

※ 응시원서 등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 사용

구 분	내 용	비고
1. 응시원서 1부 (별지 제1호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응시수수료 납부 후 제출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사용불가</li> <li>- (방문접수) 의정부시청 민원여권과(본관 1층) 경유하여 수입증지 첨부 후 자치행정과 인사팀에 제출</li> <li>- (우편접수) 우편통상환 구입·동봉 후 발송(받을 분 기재금지)</li> <li>※ 우편통상환 구입은 금융업무이므로 우체국 마감시간 유의</li> <li>※ 수수료: 가(5)급 1만원, 나(6)~다(7)급 7천원, 라(8)급~마(9)급 5천원</li> </ul>	필수
2. 이력서 1부 (별지 제2호서식)	이력서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 증명서류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기재(전일 또는 시간제 표시)	필수
3.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3호서식)	A4용지 2매 이내	필수
4.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제4호서식)	A4용지 5매 이내	필수
5. 경력(재직) 증명서 (별지 제5호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당업무, 근무기간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만 인정</li> <li>- 발행기관 직인, 발급담당자 서명 및 연락처 필수</li> <li>○ 시간제 근무, 비상근직 등 근무형태나 근무시간이 불규칙적 이거나 불분명한 경우 <b>주당근무시간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함</b></li> <li>○ 회사 경력증명서 양식 상 구체적인 업무 및 기간이 명시되지 <b>않는 경우 반드시 인사 담당자의 자필 확인 또는 업무분장표 등의 증명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b></li> <li>○ 직장 폐업 등의 사유 발생 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추가 증명서류 제출 가능</li> <li>※ 제출된 증명 서류로 관련 경력 인정 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li> </ul>	해당자 제출
6.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 (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li> <li>- 보험가입 전체기간 확인이 가능하도록 발급</li> <li>- 경력증명서 내용과 불일치 시 증빙추가서류 제출필요</li> </ul>	필수
7.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의견서 1부 (별지 제6호서식)	해당 자격요건 체크 표시	필수
8. 동의서 (별지 제7호서식)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필수

구 분	내 용	비고
9. 자원봉사활동 자기기술서 (별지 제8호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원봉사활동 자기기술서 및 실적확인서</li> <li>-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2년간 실적만 해당</li> </ul>	해당자 제출
10.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졸자는 고등학교 졸업 증명서 제출</li> <li>박사 또는 석사학위 보유자라더라도 학사 학위 증명서 제출</li> <li>※ 해외 학위는 반드시 한글번역문을 공증하여 첨부</li> </ul>	필수
11. 기타 증빙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련 분야 자격증 사본(원본 지참)</li> <li>기타 자격증 등 이력서 기재 내용 관련 증빙자료 각 1부 (원본 지참)</li> </ul>	해당자 제출
12. 주민등록초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등록초본 1통(현재 주소만)</li> <li>⇨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li> </ul>	필수
※주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출서류 편철 시 스테이플러, 클립, 플래그(띠지) 등 사용 금지</li> <li>모든 증명 서류는 사본 제출이 원칙이나, 발급기관이 모호하거나 해외인 경우 원본 지참</li> <li>해외 발급 증명 서류는 공증된 한글 번역문을 첨부하여 제출</li> <li>모든 증명 서류는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발급분을 제출하여야 함</li> </ul>	

## 9. 기타사항

- 의정부시인사위원회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 응시자는 응시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자격요건에 충족되지 않을 경우 보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서식은 의정부시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비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 예) 기준: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많은 사람

- 경력 증명 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응시자 및 서류전형 적격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 인원보다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연장)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며, 기존 접수된 응시원서 등 모든 서류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응시자 중 적임자가 없는 경우 최종 합격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최종 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차하위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선발)할 수 있습니다.
- 합격 결정 후에도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결격사유조회,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보수 및 복무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제규정을 적용합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 시 관련 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안내)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56조에 따라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영리업무의 금지대상이 되지 않는 다른 직무를 종사하고자 할 때에는 임용 후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의정부시 홈페이지(<http://www.ui4u.go.kr>) 임용시험 공고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용절차 관련 문의 : 자치행정과 인사팀 (☎ 031-828-2315)

▶ 담당업무 관련 문의

임용예정분야	부서	연락처
목공소 운영관리	녹지산림과 수목원팀	031-828-4654
방문건강관리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	031-870-6052
불법주정차 단속	송산3동 허가지원과 주차관리팀	031-870-7542